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참조63)

2023.11.22.(수)10:00

본 회 의 장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성 남 시 의 회

목 차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교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종성입니다.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첫 번째,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3호 중

“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를

“ ‘직원’이란 성남시의회의원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로

안 제4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안 제4조제2항 중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을 “행위를 시정 조치”로

안 제11조제1항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을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으로

안 제13조제2항 중

“ 취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두 번째,

“성남시 결산 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가 선임할 수 있는 감사위원의 수가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중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를
“3분의 1 이하로 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세 번째,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성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네 번째,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퇴사 급증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복무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 및 장기재직의 동기를 부여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 종 성

행정교육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입니다.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11월 21일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열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제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제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첫 번째,

“성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매년 폭염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두 번째,

“성남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적용대상 시설물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중이나, 그 외 사각지대에 놓인 주요시설물을 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체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재범의 위험과 모방범죄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성남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제도 마련이 시급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이상동기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남시민의 안전한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나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네 번째,

“「전라북도 남원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원시와 자매결연을 하여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에 부합하는 4차 산업 교류와 협력사업 추진으로 상생발전 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분야 교류를 통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교류로 도시경쟁력 향상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사업 범위에 청년을 추가해 청소년과 청년 정책사업을 연계해, 성장과 자립이라는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여섯 번째,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범위와 “취약계층 청년”을 명시하고, 청년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신규 청년 주거 지원 사업 등 청년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일곱 번째,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 취창업 관련 신규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여덟 번째,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연마스크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공기관 등에 비치하도록 권장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보다 확실하게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홉 번째,

“성남시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파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열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퇴사 급증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복무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 및 장기재직의 동기를
부여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열한 번째,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
시정시책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각계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져 표결 후
“부결” 하였습니다.

○ 열두 번째,

“2024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정연구원에 2024년도 출
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열세 번째,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범위·금액의 구체화 및 반납·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성남시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제9조제3항제3호의 내용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표 3 서식’으로

- 안 [별표3] “확약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열네 번째,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ALL-Pass) 신청횟수

제한 해제를 통해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보다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예체능 등
변화하는 직업군 수요에 맞춰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열다섯 번째,

“2024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성남시 청소년재단의 2024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출연금 출연을 위하여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열여섯 번째,

“2024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2024년도 출연금을 (재)성남시장학회에 출연하기 위해 성남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출연안을 제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박 경 희

[붙임.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3]

확 약 서

지원신청자 ○○○(소속, 직위(급), 주민등록번호)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비용의 지원 및 반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약합니다.

1.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변호비용의 지원에 동의함.
2.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소송에서 승소(무죄판결)할 경우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겠음.
 - 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 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3.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받은 변호비용을 즉시 반환하겠음.
4. 성남시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성남시가 지원한 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20 년 월 일

공무원 ○○○ (서명/인)
(주 소)
(연락처)

성남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성남시는 원활한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및 반납을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대상	수집 및 활용 항목	수집 및 활용 목적	활용 및 보유기간
공무원 변호비용을 지원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식별, 재산조회 등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등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자의 활용 목적	제3자의 활용 및 보유기간
신용기관 등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연락처, 직업 등)	본인식별, 재산조회 등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등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

대상	고유식별정보의 종류	수집 및 활용 목적	활용 및 보유기간
공무원 변호비용을 지원 받은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식별, 재산조회 등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등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본 인 ○○○ (서명/인)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고병용입니다.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첫 번째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네 번째,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적용하고 시립 동물병원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3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삭제하고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안 제28조제2호 중 “구급이나 장기입원으로”를 “구급으로”로

안 제33조제3항제6호 중 “시장에”를 “시장이”로

같은 조 제10항 중 “공공진료소”를 “시립 동물병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기결” 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정연화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를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높이고 구매한도액을 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기결” 하였습니다.

- 여섯 번째,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4호 중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안 제18조의 제목 중 “(대행점의 협약 등)” 을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대행점” 을 “판매대행점” 으로,

안 제18조의2를 삭제하고,

안 제20조제2항의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24조제5항을 삭제하고, 안 제25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2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를 삭제하고

안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29조 및 제30조로 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를 삭제하고

안 “제29조 앞에 “제4장 보칙” 을 삭제한다.” 및

“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을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일곱 번째, 정연화 의원이 소개한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을 증가 요청 청원”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 할인율과 구매한도액은 실질적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를 높여 상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기한 청원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 여덟 번째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홉 번째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상위법인 폐기물시설촉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열 번째

“2024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열한 번째

“2024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성남산업
진흥원 출연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열두 번째

“2024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열세 번째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공유
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공유재산 매각” 건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열네 번째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기결” 하였습니다.

○ 열다섯 번째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이 완료됨에 따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기결” 하였습니다.

○ 열여섯 번째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이 완료됨에 따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기결” 하였습니다.

- 열일곱 번째, 고병용 의원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 통행, 경관 향상 및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숲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기결” 하였습니다.

- 열여덟 번째 “성남시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물관리위원회로 기능을 일원화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 받지 않은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9조제2항제4호 중 “제4조” 를 “제5조” 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기결” 하였습니다.

- 열아홉 번째 “성남시 수도요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누수 또는 사용량 증가에 따라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기결” 하였습니다.

○ 스무 번째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가 2019년 3월 이후 조정한 적이 없어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고 병 용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 안 극 수 입니다.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11월 21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등 15건에 대해 발의 의원 및 관제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제 법령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첫 번째,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2024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안은 시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 수행을 위한 성남시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네 번째,

서희경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및 우선 고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박주윤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과 결혼 친화적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지역 주민의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
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여섯 번째,

이영경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고자 하는 것으로,

- ▶ 안 제4조 본문 “각 호와 같다” 다음에 단서 조항 “단, 아이사랑놀이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제7항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취학전 아동이 이용가능하다.”를 추가하고
- ▶ 안 제8조 중 “놀티어”를 “놀이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일곱 번째,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지침(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가 개정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위탁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 하고,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기능 일부 삭제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여덟 번째,

이근수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홉 번째,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2024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안은 문화예술 창작·보급과 조사 연구, 성남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성남아트리움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성남문화재단에 2024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열 번째,

서은경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부과되는
사용료를 1인당 부과에서 1면당 부과로 변경하고 사용
요금을 조정하고 시설 운영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용어를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열한 번째,

김종환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와 체육진흥을
위해 시립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정비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
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부결” 하였습니다.

○ 열두 번째,

정용한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옥외영업 기준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 ▶ 안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2.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
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로
하여 신설하며
- ▶ 제3조를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성남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옥외영업장으로 한다.”로 하고
- ▶ 제4조, 제6조제2항, 제8조 중 “구청장”을 “시장”으로 하고
- ▶ 제9조를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신설하며,

- ▶ 조례안 본문과 별표1 사이 관계법령발췌서 부분을 삭제하고
- ▶ 별표 1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가.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다.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화기 범위는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숯불, 인덕션 등 소형 화기만 허용하며, 사용되는 가스 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라.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여 신설하며

- ▶ 별표 1 중 제2호를 “2. 피난, 대피, 화재예방 등”으로 하고,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가. 대지 안의 외부공간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통로나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통로를 이용한 영업은 불가하다.

나. 2층 이상의 옥외영업장에 접객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

에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대피 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통로에 선·줄 등을 표시하여 불법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 등 인화성 시설 설치·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라. 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 옥외영업장으로 확산되거나 옥외 조리 시 화재를 대비하여 옥외영업장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책임보험의 대상으로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로 하여 신설하고

- ▶ 별표 2 옥외영자업자 준수수칙 중 제1호의 “음식물 등만을 제공해야 하며,”를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한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음식물을 조리 (단순가열 포함)할 수 있다.”를 “신고한 경우의 옥외 조리행위는 단순가열(굽거나 끓이는 행위)만 할 수 있다.”로 하며,
- ▶ 제4호 중 “있다.”를 “있는 점에 유의한다.”로
- ▶ 제5호 중 “있다.”를 “있음을 유의한다.”로 하고
- ▶ 별지 제1호 서식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중 “주거지와 옥외영업장 간 직선거리 50미터 초과한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열세 번째,

성해련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열네 번째,

김윤환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관내에 재학 중인 학생의 건강한
체형 관리를 위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1조 중

“성남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성남시 소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열다섯 번째,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 안극수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광림입니다.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첫 번째,

“2024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별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 및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수립 대상이며 ‘2024년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 두 번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리모델링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및 원활한 기금 운용을 위하여 용자지원사항 수정,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위탁 명확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명칭을 변경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 제6조제3항 중

“협약사항”을 “협약사항, 제5조제2호의 용자사무 및 이차보전 업무의 위탁”으로 한다.”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세 번째,

조우현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성남시는 공동주택이 노후화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승강기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형평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촘촘한 주택관리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네 번째,

“2030 성남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2018년 수립한 성남시 기본경관계획에 대하여 「경관법」 제15조(경관계획의정비)에 의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하여야 함에 따라 성남시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김종환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및 보행안전지도사 등을 모집·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여섯 번째,

윤혜선 의원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 시키고,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한 정비업소는 부족한 실정이며, 추후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소는 매출 감소로 이어져 경영난이 예상되어,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으로 변경·지원함으로써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편의를 도모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 제3조 조문에서

“확산하고, 자동차정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로

▶ 조례안 제4조 조문에서

“이 조례는 시민 및 성남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를

“①자동차 무상점검 등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은 성남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로

▶ 조례안 제5조제5호 조문에서

“자동차의 정비 및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을

“자동차 무상점검 등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 조례안 제6조 조문에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기관·단체·조합·협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 조례안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일곱 번째,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여덟 번째,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시설개선 및 체험시설
설치 공사가 2024년 4월 중 완료 예정으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
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아홉 번째,

박종각 의원 등 열여덟분이 발의한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과
그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 택시
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택시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 열 번째,

김종환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법령상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 내 자전거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자전거 주차장 확보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의 40%에서
20%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 제17조 조문에서

“ 시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른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 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를

“자전거 주차장 설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에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열한 번째,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정자동 봉우재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봉우재어린이공원에 주차공간이 없어 인근 상가에 불법 및 무단주차로 주차분쟁이 발생하여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바 봉우재어린이공원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상인 및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 열두 번째,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지표가 2023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확정(2023.10.31.)되어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과도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내용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열세 번째,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 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2023.6.11.)에 따라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 제2조제1항 조문에서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을 삭제하고

▶ 조례안 제6조제1항 조문에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열네 번째,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예정으로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열다섯 번째,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열여섯 번째,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산성대로 지역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 열일곱 번째,

조우현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제2종을 제3종으로 상향조정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재건축 용적률 상향 개정의 요청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재건축 시 종상향 및 280%에서 300%로 용적률 상향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 열여덟 번째,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우리 시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 미매각 체비지 및 잔여 기금이 남아있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특별회계의 재원 항목을 추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열아홉 번째,

김종환 의원이 발의한

“백현마이스단지 시행계획에서 백현동 카페거리 방향으로 차량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설치를 명시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백현마이스단지 도시개발 시행계획에 마이스단지와 백현동 카페거리를 연결하는 차량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설치를 청원 하는 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 스무 번째,

김종환 의원이 발의한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성남의 뜰의 송전탑 지중화 촉구 및 성남의뜰이 이행명령을 회피하거나 파산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책 강구를 청원 하는 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 광 림